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- 765호

“2022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중 “햇빛두레 발전소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9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

1 지원사항

□ **지원대상**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으로서, 「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-019호)」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

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□ **지원예산** : 총 150억 원 내외

* 동 공고문은 2022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“햇빛두레 발전소” 사업을 위한 지원 계획을 미리 공고하는 것으로서, 2022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

자금 용도	예 산
시설자금	150억원

주1)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주2)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」 [별표7] ‘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’ 해당 설비 대상

○ 자금 용도 안내

- (시설자금)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·감리비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

*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」 제44조

□ 지원조건

○ 용도별 지원 조건

자금 용도	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	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
시설자금	15억원 이내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	분기별 변동금리 (1.75%)	90% 이내

주1)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”에 따름

주2)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,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주3)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지원대상

ㅇ 농촌 태양광

농촌 태양광 지원대상

□ 햇빛두레 발전소

○ 「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」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-019호, 이하 “참여마을공고”)에 따라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,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

주1) 2022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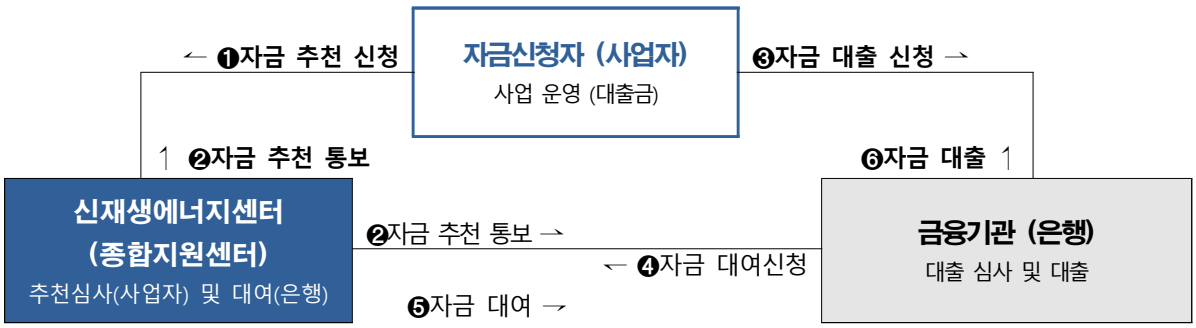
주2) 공동(조합)은 법령상 ‘태양광 발전 사업’이 가능한 단체·조합·법인인지 사전확인 (영농조합 지원불가)

주3) 2020년부터 ‘임야’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(단 19년 이전 허가분은 지원가능)

2 신청방법 및 기간

□ 추천 및 융자 절차





<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>

□ **신청방법** : 신재생에너지센터(이하 센터) 홈페이지 접수

* www.knrec.or.kr > 전자민원 > 금융지원 신청

□ **신청기간** : '22. 1. 3.(월) ~ 상시

* 예산소진시 조기종료하며, 기타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'21년 사업은 기 신청접수중('21.3.10~), '22년 사업은 예산 확정 후 '22년 상반기에 공고 예정

3 유의사항

□ 사전확인 사항

○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

○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

□ 자금신청 및 추천

○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

○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) [별표 9] 참고

-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**보험 또는 공제증서***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(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,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)

 *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

○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○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

○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*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

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

* 신.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.운영지침 제10조

□ 설비 성능 등

○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,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○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

○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(태양광모듈 효율 17.5%이상 등)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
*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
○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·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·용량·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

○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, 채권·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·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

□ 자금신청 반려대상

○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“신·재생에너지센터-전자민원”에서 확인가능하며,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

○ 자금지원 대상(사업·시설)자격이 부적격인 경우
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[별표7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
-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
-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

*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,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

○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

○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

4 기타사항
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”과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□ 상세내용 문의

○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knrec.or.kr) 참조

○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(1855-3020),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

<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>

지역본부	소재지	전화	팩스
서울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	02)2071-3817	02)2071-3808
경기	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(하동)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~505호	031)300-9944	031)300-9999
인천	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(구월동) 인천 YWCA빌딩 3층	032)249-1935	032)249-1901
강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(온의동)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	033)248-8423	033)256-3914
세종충북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	043)901-6011	043)901-6009
대전충남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	042)323-4405	042)323-4430
전북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(팔복동 1가)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	063)906-6999	063)906-6998
광주전남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(오룡동)	062)602-0027	062)223-2362
부산울산	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(거제동)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	051)999-6811	051)503-7742
대구경북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(대천동)	053)580-7919	053)751-0555
경남	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(CECO) 1층 103호	055)600-8123	055)600-8199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(노형동) 전문건설회관 4층	064)909-0305	064)747-2682

붙임 **햇빛두레 발전소 세부사항 안내**

□ 개요

○ 설비용량 500kW 이상 1,000kW 미만의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*을 충족하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

* "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"(신·재생에너지센터공고)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춘 후 거주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청 → 신·재생에너지센터 평가를 거쳐 선정

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

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(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)하는 30인 이상의 주민(이하 "마을주민")이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(이하 "주민지분율")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(행정리)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

② 마을주민 거주지(행정리) 내 일반부지,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,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(임야 제외)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(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)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,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

주1)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,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,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

주2)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,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"의결권 있는 주식"을 "출자좌수"로 봄

주3) 거주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여부를 사전 확인 필요

주4)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은「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」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1-019)에 따름

□ 지원내용

①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 : 10개 사업자 총 150억원

*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,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 신청 자격 부여

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(한국형 FIT) 적용

*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 10조의2에 따른 "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" 대상에 포함('21.11. 행정예고 예정)

③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우대가중치 적용

*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%, 총사업비 대비 4%를 초과함에 따라, 고시 [별표2] 비고 16에 따른 우대가중치(+0.2) 부여